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7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임오경・임미애・차지호

조계원 · 서영교 · 윤후덕

박 정・한민수・문대림

김재원 • 박수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,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,875곳까지 늘어났는데, 전체 6,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.2%인 4,568개관이고 29.8%인 2,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.

또한 직원이 있는 4,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.5%인 1,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.0명에서 2020년 3.9명, 2022년 3.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.

독서·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.2%인 4,623개관으로 32.8%인 2,252개관은 독서·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

위한 인력지원, 장서확충 및 독서·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, 장서확충 및 독서·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	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
영) ① (생 략)	영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
	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
	해 인력지원, 장서확충 및 독서
	•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
	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